



특집 | 02

방재관련법률 및 기관과 협·단체현황

목 차

1. 서 론
2. 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현황
3. 소방방재청 소관기관 및 협·단체
4. 결 론

김 동 현
 ((사)한국BCP협회 사무국장)

1. 서 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6항)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삼국시대 이래 실시되었던 부역, 조선시대의 향약 등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여 오다가 해방이후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을 통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하에서 재난에 국가가 직접대처하기 시작해왔으나 '95년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각인되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재난관련 법령의 제·개정, 각종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재난의 소관을 각 부처나 계 단위조직에서 담당해 왔는데 1995년 7월 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같은 해 10월 1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의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하였다. 국무총리실에 국가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안전 관리 심의관실이 설치되었고 내무부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설치

후 재난관리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유형이 다양해지고 부실시공과 시설물노후화로 인한 대형재난발생요인이 적지 않아 밀도 있는 재난예방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써 1990년대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전신으로 하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고, 본격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골격을 갖추게 된다.

최근에 발생한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와 올해 전국적으로 발병한 조류독감의 예로부터 볼 수 있듯이 피해규모가 대형화된 것은 물론 재난관리자체가 매우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로서 재난발생과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과 대비활동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재난대응활동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의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진한국에

걸 맞는 최적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에게 차별화된 재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적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차별화된 재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재관련 국내의 기관과 협·단체를 조사하여 각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다원화로 인한 정보공백 혹은 정보중복관리현상을 개선하고, 나아가 재난발생 시 방재장비 및 물자의 적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해결책들이 연구되고 부분적으로는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방재관련 국내기관과 협·단체에 대한 조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조명해 보고 이를 정리해 봄으로서, 향후 방재관련 조직구성에 기반이 되

고 제반기관과 협·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방재네트워크구축 및 유관기관구축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현황

〈표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의 구분

구분	내용
자연 재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 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미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먼저 재난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 기초지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

〈표2-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법률

법률	법률의 목적	소관부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도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
2) 자연재해대책법	이 법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도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4) 소하천정비법	이 법은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6) 재해구호법	이 법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8) 풍수해보험법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9) 지진재해대책법	이 법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을 정의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의 구분에 의하면 자연재난, 인적재난과 국가기반 재난, 제2호에는 해외 재난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은 관련 법적근거에 따라 상이하므로 그 차이를 비교분석해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소방방재청 소관기관 및 업·단계

정부기관 중 방재관련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주가 된다.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본청 1관 3국 21

과 2팀과 3개의 소속기관에 본청 343명, 소속기관 202명 등 5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19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3.1 소방방재청 소관 위원회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7개의 정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3-1>에서 각 위원회별 성격과 근거법령,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보았다.

3.2 자연재해분야 비영리법인

소방방재청 소관의 자연재해분야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08년 8월 기준으로 특수법인 2개, 사단법인 8개로 총 10개의 법인이 등록, 활동 중에 있다<표3-2>.

3.3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비영리법인

소방방재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비영리법인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31개, 학회로 5개, 재단법인으로 4개, 특수법인으로 6개로 총 46개가 운영 중에 있다<표3-3>.

<표3-1> 소방방재청 소관 위원회현황

번호	명칭	성격	근거법령	설치일자	기능	소속	위원장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04.3.11	- 국가 긴급구조 대책 총괄조정 - 긴급구조지원 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 계획 수립	구조구급과	차장
2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자문	소방시설공사업법	94.12.22	- 중요소방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	소방장비과	소방정책국장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조정	풍수해보험법	07.2.22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을 선정, 재정 자원에 관한 사항 등 풍수해보험 관련 정책 심의, 조정	재해보험과	청장
4	재해영양평가위원회	심의·조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양평가법	96.11.21	- 재해영양평가서 사전검토 및 심의	재해경감과	방재관리국장
5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회	심의·조정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미구성	- 재해위험 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검토	재해경감과	청장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문	자연재해대책법	06.1.1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의 검토 분석과 의견 제시	재해경감과	방재관리국장
7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법	미구성	- 재난관리 표준 제정	기후변화 대응과	행안부장관

〈표3-2〉 자연재해분야 비영리법인 현황

법인명	설립일	설립근거	주요업무	임원진
(특)한국방재협회	1999. 2. 18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0명
(특)기업재해경감협회	2008. 3. 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10명
(사)한국방재학회	2000. 11. 27	민법 제32조	방재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1명
(사)한국재난안전교육협회	2002. 12. 18	민법 제32조	재난안전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11명
(사)재해극복범시민연합	2004. 1. 26	민법 제32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0명
(사)한국비서지협회	2004. 12. 28	민법 제32조	대중·지진 등 대형재난발생시 기업의 활동 보장을 위한 기술 및 교육활동	11명
(사)빛물학회	2006. 9. 27	민법 제32조	빛물의 특성수질 및 유출에 대한 조사연구	15명
(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2007. 3. 13	민법 제32조	공공 및 민간분야 재난관리표준의 수립과 용어의 개발	51명
(사)사면재해경감협회	2007. 11. 23	민법 제32조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자문	20명
(사)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2007. 11. 23	민법 제32조	자연재해저감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자문	20명

〈표3-3〉 소방방재청 소관 비영리법인현황

1) 일반 비영리사단법인

연번	허가번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허가일	전화번호	근거 법률	소관실팀	법인 성격	비고
1	1988-2	한국소방동우회	신주영	1988-03-30	2069-2119	민법 제32조	소방행정과	사단	
2	2000-31	한국소방공사협회	박영원	2000-11-29	3471-4251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3	1999-4	한국수난안전협회	유상철	1999-02-09	031-664-1192	민법 제32조	구조구급과	사단	
4	1999-19	한국인명구조연합회	신귀철	1999-09-09	2000-5868	민법 제32조	구조구급과	사단	
5	2000-9	한국소방기술사회	김광후	2000-06-13	832-3516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6	2003-23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2003-08-14	365-1112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2005.08.04 정관변경(정관 제 3조(목적사업)의 추가)
7	2000-16	한국112무선 봉사단	김명배	2000-09-01	401-0112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8	2002-01	한국안전인증원	구은희	2002-02-08	3701-1381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9	2002-16	한국재해정보협회	정홍수	2002-12-18	711-4458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10	2003-02	세이프키즈 코리아 (SAFE KIDS KOREA)	송자외3	2003-01-27	829-0197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2005.12.21 정관변경 (주무관청 변경) 2007.01.23 정관변경 (사업관련)
11	2003-08	한국안전시민연합	김명배외2	2003-05-03	402-7114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12	2003-16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영오 김태운 윤선화	2003-06-25	3476-0119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2005.07.11 소재지 변경
13	2003-28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2003-12-05	400-4864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14	2004-01	재해극복법시민연합	육광남	2004-01-26	745-666 019-422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2004-04	HID재난구조단	한지열	2004-02-19	412-7311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폐지 - 명칭 변경
15	2004-06	한국재난구조단	이정구	2004-02-23	404-7311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정관변경 (민간안전협력과 -304. '04.07.26) (구)HID재난구조단 ('04.2.19)에서 현명칭으로 변경
16	2004-07	한국비시피협회 www.bcp.or.kr	황효수	2004-12-28	722-7441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17	2005-01	보국구조봉사단	최상만	2005-02-18	2678-5911	민법 제32조	구조구급과	사단	
18	2006-01	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이승규 허선자	2006-02-03	2201-7758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19	2006-2	지구촌재난구조단	김종한	2006.08.24	2238-1037	민법 제32조	구조구급과	사단	
20	2006-3	해병대전우회 인천, 봉서문화단체	김명환	2006.09.07	417-0928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21	2006-4	빛물학회	박주석	2006.09.27	880-7365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22	2006-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김준욱	2006.12.05	552-2612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07.03.21 대표 및 소재지 변경
23	2007-01	서울산악구조난구조대	김남일	2007.01.17	000-0000	민법제 32조	구조구급과	사단	
24	2007-04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최남희	2007.05.22	743-7671	민법제 32조	예방전략과	사단	
25	2007-05	한국등산안전문화연구원	이종팔	2007.05.25	741-2028	민법제 32조	시설안전과	사단	
26	2007-06	해병재난안전교육단	박수부	2007.07.13	053-526-5119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사단	
27	2007-07	사면재해경감협회	김상규	2007.08.17	720-1465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28	2007-08	한국자연재해저감산업협회 www.kandri.or.kr	윤용남	2007.11.23	031-440-8242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29	2008-01	AFIC(아시아소방검정협회)	남상호	2008.01.09	031-289-2851	민법 제32조	소방장비과	사단	
30	2008-02	한국다중이용업 소방안전중앙회	정일수	2008.04.29	02-2052-1526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31	2008-03	한국소방시설관리사 협회	김용상		011-505-5634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2) 학회 비영리사단법인

연번	허기번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허가일	전화번호	근거 법률	소관실팀	법인 성격	비고
1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수경	1987-08-13	555-2450 3453-	민법 제32조	소방제도과	사단	94.6.1소방학회에서 현명칭 으로 변경
2	2000-30	한국방재학회	송재우	2000-11-27	567-6311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3	2005-02	한국방재정보학회 www.kosdi.or.kr	임학규	2005-10-25	031-330-2637	민법 제32조	시설안전과	사단	
4	2007-02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조원철	2007.03.13	722-7073	민법 제32조	재해경감과	사단	
5	2008-04	한국소방행정학회	박창순	2008.07.03	2671-8693	민법 제32조	소방행정과	사단	

3) 비영리재단법인

연번	허가번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허가일	전화번호	근거 법률	소관실팀	법인 성격	비고
1	1995-6	한국재난연구원	윤영조	1995-12-04	2082-5400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재단	2000.9.8제)한국건설재난안전 연구원에서 현명칭으로 변경
2	2000-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2000-07-07	400-9248	민법 제32조	예방전략과	재단	2000.11.13 정관변경 (재난 13280-346호)에 따라 등 씨 랜드천사의어린이안전재단 에서 현명칭으로 변경
3	2007-03	사회안전연구원	백봉현	2007.04.23	424-0112	민법 제32조	시설안전과	재단	
4	2007-09	U-119 안전재단	최운	2007.12.31	02-561-2236	민법 제32조	구조구급과	재단	

4) 비영리특수법인

연번	허가번호	법인명칭 홈페이지	대표자	법인허가일	전화번호	근거법률	소관실팀	법인 성격	비고
1		대한소방공제회www.w.sogong.kr	천광철	1987-12-07	409-6388 430-7459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행정과	특수	1984.10.29사)대한소방공제회 설립 (내무부장관 승인 제9호)
2		한국소방검정공사www.kfi.or.kr	남상호	1979-07-01	031-289-2700	소방기본법 제45조	소방장비과	특수	79.7.1제)한국소방검정협회 에서 개칭 92.7.1특수법인 전환
3	1999-5	한국방재협회www.kodipa.or.kr	서병하	1999-02-18	3472-806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재해경감과	특수	
4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김명현	1980-10-07	2679-8745 2671-	소방기본법 제40조	소방행정과	특수	
5		전국재해구호협회www.relief.or.kr	최학래	2005-10-10	3272-760	재해구호법 제10조	복구지원과	특수	64.10월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05.10월보건복지부에서 이관
6	2008-1	기업재해경감협회www.bcdm.or.kr	이영재	2008-03-26	02-720-2365	재해경감을위한 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30조, 민법제32	재해경감과	특수	

3.4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은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목록이다.

- 재외공관
- 국립수목과학검역원
- 국립식물검역소
- 지방체신청
- 국립검역소
- 지방노동청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항공청
- 지방국토관리청
- 홍수통제소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산림관리청
- 한국철도공사
- 시·도의 교육청
- 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 대구지하철공사

- 한국농촌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자원재생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항만공사 ○ 한국방송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산업안전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부산교통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 산림조합중앙회 ○ 대한적십자사
-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
-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 결론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본청 1관 3국 21과 2팀과 3개의 소속기관에 본청 343명, 소속기관 202명 등 5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9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67개의 정부위원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은 일반사단법인으로 31개, 사단법인 중 학회로 5개, 재단법인으로 4개, 특수법인으로 6개로 총 46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조직들의 유기적인 활동으

로 재난 및 안전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다.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난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관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유기적인 상호연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각시간과 사각지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므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2008년 재난유형별 통합관리체계연구, 행정안전부.
- [2] 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방방재청.
- [3] 2008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I,II,III, 행정자치부.
- [4] 2007년도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소방방재청.
- [5] 종합법률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법제처.

저자약력



김 동 현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학사)
 1975년~1983년 대우중공업(주) 전산담당
 1983년~1990년 (주)코오롱상사 개발과장
 1990년~1997년 코오롱정보통신(주) SI사업부장
 1997년~1999년 하이시스정보시스템(주) 상무이사
 1999년~2000년 한국능률협회총합연구소 마케팅팀장
 2000년~2002년 한국능률협회메니지먼트 경영고문
 2002년~2004년 글로벌컨설팅그룹 상무이사
 2000년~2008년 국제정보컨설팅(주) 대표이사
 2008년~현재 (사)한국BCP협회 사무국장
 재난관리활동내역: 2007년도 재난관리지도사 /
 소방방재청 기업재난관리정책추진기획단 전문위원 /
 2008년도 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 「재난관리전문용어표준화연구」 과제수행 /
 2008년도 기술표준원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사회시스템
 표준전문가 양성사업」 과제수행 / 재난관리사 및
 재난관리지도사 교육과정설계 및 교재·교안편찬 /
 재난관리사 및 재난관리지도사 강사 /
 재난관리 실무과정 워크숍지도(제3기~현재) /
 월간재난포커스 「인적재난바로보기」 전문가칼럼기고(2007.1
 2~2008.2) /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
 2008년도 재난관리 지자체매뉴얼평가 /
 제2회 자연재난 사진·영상물공모전 심사위원 및
 전시회운영 / 2008년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전문위원 /
 ISO/TC223 제5차 서울총회운영 /
 제2회 DEMEX준비위원회 및 운영
 이 메 일 : ezenstar@gmail.com